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2015 ~ 92
----------	-----------

제출연월일	2015. 10. 26.
제 출 자	거 창 군 수

1. 제안이유

○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가공지원센터의 기능(안 제1조 ~ 제4조)

나. 운영위원회 설치와 임무(안 제5조 ~ 제8조)

다. 농산물 가공지원센터의 운영과 사용(안 제9조 ~ 제15조)

○ 관리·운영, 사용허가, 사용제한, 사용료, 사용료의 감면, 사용료의 반환, 사용자 준수사항

라. 운영위탁(안 제16조)

마. 준용, 시행규칙(안 제17조 ~ 1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나. 예산조치 : 130백만원(2016년 본예산 편성)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5. 9. 24. ~ 10. 14.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 붙임

(5) 성별영향분석 : 반영함(제5조)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이하 “가공센터”라 한다)는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322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등”이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2. “사용자”란 가공센터의 시설과 가공장비의 사용을 허가받아 이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가공시설”이란 가공센터에서 농산물의 제조와 유통판매 등에 이용되는 시설, 장비 등 일체를 말한다.
4. “농산물”이란 농업인등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활동으로 관내에서 생산한 산물을 말한다.
5. “제품”이란 가공시설을 사용하여 생산한 시제품, 반제품, 상품 등 생산물 일체를 말한다.

제4조(가공센터의 기능) 농업인등의 농산물 가공 활동 지원을 위하여 가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1. 농산물 가공 상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기술이전, 창업교육, 컨설팅, 마케팅 및 홍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농업인등의 가공식품 제조와 상품화를 위한 가공시설 이용 지원
3. 국가·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기관, 군에 소재한 학교, 식품업체, 연구기관의 농산물을 이용한 시험·연구의 지원

4. 그 밖에 농산물 가공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구성) ① 군수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가공센터 업무 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농산물 가공 창업에 관한 각 분야의 전문가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의 생산자단체, 가공업체 대표 등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2회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식품가공담당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가공센터의 운영 계획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가공시설의 기본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3. 가공센터의 시제품 개발 기술지원과 자문에 관한 사항
4. 가공센터 위탁자 선정과 해지에 관한 사항
5.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물 훼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 조치의 결정
6. 가공시설의 사용료 결정
7. 그 밖에 가공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제7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최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거창군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관리·운영) ① 군수는 가공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운영부서, 책임공무원, 운영요원을 포함한 가공센터 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용자의 가공시설 사용, 운영상황, 그 밖의 관련서류를 점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각종 서류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가공시설의 사용) ① 가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농업인등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가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제품의 부원료는 예외로 한다.

2.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농식품가공창업교육을 이수한 사람

② 가공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용허가를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사용자는 관계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허가된 기간 동안 가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완료 후 관계 공무원의 확인 점검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사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가공시설의 사용 시 주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관계 법령 등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3. 가공센터의 적정한 가공생산용량을 초과한 농산물을 가공하여 가공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가공시설로 가공품 생산이 불가능한 경우

제12조(사용료) ① 군수는 가공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사용료는 가공장비 기종과 식품의 유형에 따라 기기 구입가격, 에너지 및 소모성물품의 소비량, 제품의 판매가격, 가공물량, 공공요금, 농업인등의 부담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제13조(사용료의 면제) 군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4조(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남은 기간의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가공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가공시설의 고장, 수리, 점검 등의 사정으로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을 때
3.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제15조(사용자 준수사항) 사용자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용자는 가공시설을 이용한 제품의 제조, 유통판매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과 장비의 손상·분실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준하는 실비로 변상한다.
3. 가공시설의 사용허가 기간 중 안전관리 수칙과 장비사용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어떠한 권리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6조(운영위탁) ① 군수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거창군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농업인들의 농산물 가공 활동을 위하여 가공센터에서 이행하는 활동에 소요되는 사업비와 운영위탁 시 경비 지원

나.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

○ 제4조(가공센터의 기능) 농업인들의 농산물 가공 활동을 위하여 가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1. 농산물 가공 상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기술이전, 창업교육, 컨설팅, 마케팅 및 홍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농업인들의 가공식품 제조와 상품화를 위한 가공시설 이용 지원
3. 국가·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기관, 군에 소재한 학교, 식품업체, 연구기관의 농산물을 이용한 시험·연구의 지원
4. 그 밖에 농산물 가공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6조(운영위탁)

2. 비용추계의 결과

가. 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5년)	2차년도 (2016년)	3차년도 (2017년)	4차년도 (2018년)	5차년도 (2019년)	합계
총 비용(a - b)		130	140	135	130	125	660
세출	군 비	130	150	150	150	150	730
	소계(a)	130	150	150	150	150	730
세입							
	소계(b)	0	10	15	20	25	70

3. 관련 의견

- 경쟁력 있는 농업인 육성과 농업인 농외소득활동 활성화를 위해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사업비

작성자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재 영